

고성군세조례증개정조례(안)

의 번 호	456
-------------	-----

제출연월일 : 1997. 12. 13.

제출자 : 고성군수

1. 개정사유

1997.10.1일 개정된 지방세법 제7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전적부심사제도의 시행에 따라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에 원활을 기하기 위함.

2. 주요골자

- 지방세에 관한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심사하기 위하여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를 두도록 함(안제14조의2)

3. 참고사항

- 경상남도 세정13430-769('97.10.21) 「과세전적부심사청구처리지침」

4. 본문

고성군조례제 호

고성군세조례증개정조례(안)

고성군세조례증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14조의2(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) ① 지방세에 관한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심사하기 위하여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(이하 "적부심사위원회"라 한다)를 둔다.

② 적부심사위원회의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, 보궐로 지명 또는 위촉된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임기로 한다. 다만 당연직 위원은 그러하지 아니하다.

③ 고성군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출석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고성군 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, 기타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.

④ 적부심사위원회의 조직과 운영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(신설)	<p>제14조의2(파세전적부심사위원회) ①지방세에 관한 파세적부심사청구를 심사하기 위하여 파세전적부심사위원회(이하 "적부심사위원회" 라 한다)를 둔다.</p> <p>②적부심사위원회의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 는 2년으로 하되 보궐로 지명 또는 위촉된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임기 간으로 한다. 다만, 당연직 위원은 그러하 지 아니하다.</p> <p>③고성군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 에 출석한 때에는 예산외 범위내에서 고성 군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, 기타 실비를 지급할수 있다.</p> <p>④적부심사위원회의 조직과 운영 기타 필요 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</p>